



의안번호	제7호
회의 연월일	2024. 1. 20. (제556회 회의)

심의
의결
사항

도로교통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(대통령령)

제출부서	경찰청 (생활안전교통국)
제출연월일	2024. 12. 11.

교통기획과장, 교통기획계장

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에 교육감 및 교육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와 교육감 및 교육장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를 추가하려는 것임

2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

가. 「자동차등록령」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(이하 “어린이교육시설등”이라 한다)의 장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 또는 같은 법 34조에 따른 교육장(이하 “교육장”이라 한다)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

나.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,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) 법 제52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	제31조(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)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「자동차등록령」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(이하 “어린이교육시설등”이라 한다)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	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 가. 「자동차등록령」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(이하 “어린이교육시설등”이라 한다)의 장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 또는 같은 법 34조에 따른 교육장(이하 “교육장”이라 한다)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나.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,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통기획과	
연 락 처	(02) 3150 - 0659